

우리나라 특허권,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는다

한·싱가포르 FTA 지재권 협상 성과

우 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싱가포르에서도 실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11월 20일 칠레 산티에고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우리 특허권이 외국에서 바로 인정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협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진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 경우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번에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특허청은 PCT조약에 따른 싱가포르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은 한번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심사능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세계 12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지재권 협상을 주도하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 및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기관 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싱가포르가 ASEAN의 선도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과는 다른 동남아국가 등에 대한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등의 화상디자인 법적보호 활발

정 보기술의 발달로 화상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특허청은 지난 2003. 7. 1부터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의장법에 의한 의장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화상디자인이라 휴대전화, 컴퓨터모니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레픽 등의 디자인을 말한다.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CD플레이어, 자동차 내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레픽 명령창, 홈페이지의 디자인, 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화상디자인에 포함된다.

2003. 7. 1이래 2004. 9. 30까지 화상 디자인 총 출원건수는 420건이며, 이중에 157건이 등록결정되어

상표권분쟁 예방, 상표이의신청제도 우선적으로 활용

상 표등록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관이 당해 상표를 상표법의 제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출원공고된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일반공중심사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심사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완전무결함을 기하기는 어렵고, 또한 혹시 심사관이 자칫 간과하거나 주관적,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못 출원공고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에 참여케 하여 결함있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그 외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자기의 상표권을 미연에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부실권리의 상표등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청구절차와 비용도 간단하고 저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이 요청된다.

만약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 하자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비록 결함있는 상표라 할지라도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한 심판이나 재판절차를 거쳐 무

효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침해 주장 등의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여 그 상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특허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이의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 내외 소요되는 것을 5~6개월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심사과장 책임하에 각 심사과별로 월별, 년별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되 심사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과장 및 심사관의 평가 고과에 반영토록 하며 '이의신청심사종결예정통지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이의신청의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경력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전담하도록 하는 '이의심사전담관제'를 운영하여 특별 보직관리하여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코자 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행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공보 발행 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이의신청심사업무도 현행 심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가칭 '상표이의전담심사부'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제공 특허청

의장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247건은 심사대기 중에 있으며, 16건은 거절이 결정되었다. 화상디자인을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인터넷전문기업인 엔에이치엔(NHN)으로서, 출원한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48건)와 휴대전화(11건)

로 총 59건이 출원되어 42건을 의장권으로 등록받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에스디에스(47건), 엘지홈쇼핑(31건), 주식회사더블유알지(28건), 삼성전자주식회사(26건), 비씨큐어(26건)순으로 화상디자인이 출원되었다.